

다전공제 이수에 관한 규정

제정 2022.07.18.

개정 2025.04.21.

개정 2026.06.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1조(다전공제 운영)에 따라 다전공제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수전공”은 학생이 소속한 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전공”은 학생이 소속한 전공 이외의 전공에서 정해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단위전공”은 특정 직무나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규모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복수전공과 부전공

제3조(모집범위)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전문학사과정의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단, 모집정지 전공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문화산업 융합형 인재로의 자기개발을 위해 소속한 전공 이외에 전공에 대한 학습을 희망하여 이수하고자 소정의 절차로 신청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는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승인된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신청절차)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용인원 및 선발방법) ① 복수전공과 부전공 이수를 위한 허용인원은 각각 해당 학년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 이하로 한다. 매 학기별 신청기간을 두어 학년도별 허용인원 내에서 선발하되, 이미 선발한 인원 중 재적생(재학, 휴학) 수를 제외한 잔여인원에 대하여만 선발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자와 부전공자는 스쿨별로 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은 교무관련 부서에 통보 후 공지한다.

제7조(이수학점) ① 복수전공과 부전공 이수학점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복수전공	부전공
학점	36학점	21학점

② 복수전공과 부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의 학점이수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의 최대 9학점까지 성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학위수여) ① 복수전공자와 부전공자는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제7조 ①항의 이수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요건에 부합하면 학위증서에 복수전공명 혹은 부전공명을 표기하여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3장 소단위전공

제9조(이수대상) 소단위전공은 재학 중인 모든 스쿨(전공),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휴학생은 복학 후 이수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절차) ① 소단위전공은 해당 과정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단위전공의 개설 정보는 교무 관련 부서에서 매 학기 수강신청 전에 과정의 명칭, 구성 교과목, 학점 및 이수 요건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수기준) ① 소단위전공은 해당 과정에 편성된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하며, 일부 교과목만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디그리별 과목 구성 및 학점 기준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며, 과정 내 교과목은 취득 학기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이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12조(학점인정) ① 소단위전공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소속 전공의 교과목이 소단위전공 과정에 편성된 경우, 해당 교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3조(이수증 발급) 소단위전공 이수증은 해당 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이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발급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부서장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융합콘텐츠스쿨 부전공제 적용 대상) 융합콘텐츠스쿨 융합콘텐츠장작전공 소속 학생은 다음과 같이 융합전공제와 부전공제를 분리하여 운영하며, 복학생은 복학하는 학년에 해당하는 제도를 적용한다.

대상	운영제도	비고
2021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자	융합전공제	단, 융합콘텐츠창작전공으로의 부전공 이수 신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함
2022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자	융합전공제	
2023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자	부전공제	2023학년도부터 융합전공제 폐지

㉓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㉓항, 제8조 ㉑항은 2026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㉔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제 호

이 수 증

성 명:

생 년 월 일:

학 번:

전 공(학과):

소단위 전공:

위 학생은 소단위전공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청 강 문 화 산 업 대 학 교 총 장